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4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3

I. 개요

1.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6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10.
- (3) 회 부 일 : 2024. 10.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수급자, 보호자 등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영상정보의 <u>열람금지</u>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u>하여서는</u>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33조의3(영상정보의 <u>열람 및 제공금지</u> 등) ① ----- ----- ----- ----- ----- <u>하거나</u>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4. (생략)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

같다)하여서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열람·제공-----

2. -----
-----열람·제공-----

3.·4. (현행과 같음)

5. -----

-----열람·제공 시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보의 <u>열람</u>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u>열람 실태</u>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u>열람</u>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u>열람</u>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u>열람 또는 제공</u>으로----- ----- ----- -----<u>열람·제공 실태</u>----- ----- ----- -----. ⑤ ----- -----<u>열람·제공</u>----- ----- ----- -----.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u>열람 또는 제공</u>----- ---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3조의2¹⁾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피해 예방을 위하여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도록 권고의결²⁾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것임.³⁾

□ 현행법 제33조의3⁴⁾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안번호 제2019-541), 2019. 11. 18.

3)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164) 검토보고, 2020. 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를 열람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⁵⁾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⁶⁾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CCTV 영상정보 ‘열람’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영상정보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영상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CCTV 영상의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7)에 따라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인력·장비의 부재에 따라 영상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영상정보 제공 요청자가 부담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한하여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수급자, 보호자 등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3. 6. 8.

□ 첫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재 실무상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외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에 ‘열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제공’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⁹⁾

□ 둘째,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자 등에게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열람’ 시에는 비식별화 조치 없이 원본 영상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타 수급자 및 종사자 등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도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⁰⁾, 이 같은 경우에도

9) 참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열람과 제공을 함께 금지하고 있음.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범죄수사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비식별화 조치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수급자·보호자 등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비식별화 조치 관련 비용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부 지원방안 등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영상정보 열람·제공 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노인학대 발생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즉시 열람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므로, 범죄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예외 사유를 둘 필요가 있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나, 범죄사건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비식별화 조치를 이유로 열람·제공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범죄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의 예외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과정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여 수급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사안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상정보 비식별화 조치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CCTV 비식별화 작업에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 및 전문장비(소프트웨어, 전용PC 등)가 구비되어야 하며, 소규모(10인 미만) 시설은 인력 및 장비 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부 지원방안 등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3